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내용 / 편성 / 운영 영역

2016. 8.



편성평가정책과

목 차 |

□ 내용영역

1.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4
2.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5
3.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6
4.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8
5.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10
6.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13
7.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14
8.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17

□ 편성영역

9.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19
10.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0
11.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21
12.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23
13.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4
14.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27
15.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28
16.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평가 30
17. 직접제작·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 평가 32
18. 지역채널의 액세스(시청자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33
19.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현황 종합 평가 34
20.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편성 평가 35
21.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편성 종합 평가 36

목 차 Ⅱ

□ 운영영역

22.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8
23.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	39
24.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42
25. 방송기술 및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	44
26.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46
27.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48
28.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49
29.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0
30.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52
31.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및 PP 만족도 평가	53
32.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	54
33.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55
34.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57
35.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59
36. 콜센터 운영실적 평가	60
37. 디지털 상품/HD 상품 전환 및 가입률 평가	61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KBS, MBC, SBS와 종편PP

나. 배점방식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결과를 배점(70점)에 맞춰 환산한 후 평가점수로 반영
(환산점수 = 프로그램 평가지수 점수 × 70 / 10)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	종편PP*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70점	35점

※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7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KI 시청자평가조사 중 프로그램 평가지수 조사결과만 방송 평가에 반영
- 프로그램 평가지수는 개별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1점 척도(0~10점)로 구성된 만족도 평가지수(SI : Satisfaction Index)와 품질 평가지수(QI : Quality Index)의 결과 값을 합산, 평균하여 산출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KBS, MBC, SBS와 종편PP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 TV (25점)	종편PP (125점)*
실시여부	- 실시 9점/ 미실시 0점	9점	
평가제도 축소여부	- 유지 3점/ 축소 0점	3점	
평가결과 제출여부	- 제출 2점/ 미제출 0점	2점	
평가결과 공개여부	- 전문공개 6점/ 공개열람 4점/ 요약본 공개 2점/ 미공개 0점	6점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여부	- 피드백 시스템 구축 5점/ 단순 피드백 3점/ 없음 0점	5점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실시여부의 경우, 연 1회 이상의 조사 실시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제도 축소 여부의 경우, 조사예산규모 기준으로 전년 대비 비교 평가. 예산규모의 축소/확대 기준은 1,500만원(전국조사 최소표본단위 1,000명 x 전화설문조사 단가 15,000원)
- 평가결과 공개여부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미공개로 간주. 공개수준(요약본 공개, 전문공개)에 따라 차등 평가함. 다만,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을 방통위 등 외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회 도서관 등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한 경우, 중간점수(4점) 부여
-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 여부의 경우, 사장보고, 임원회의, 편성회의, 제작진 설명회, 경영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제작진 또는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순 피드백으로, 프로그램 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춘 경우를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 간주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보도 및 홈쇼핑 PP를 제외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방송프로그램 수상실적을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 매체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최고점을 기준으로 9 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 (*매체구분 : 지상파TV·지상파DMB-TV / 지상파R·지상파DMB-R / 음악FM / SO·위성/종편PP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지상파 TV	지상파R, 지상파DMB	SO, 위성방송	종편 PP
	30점	25점	10점	15점
87.5% 이상	30점	25점	10점	15점
75% 이상 ~ 87.5% 미만	27점	22.5점	9점	13.5점
62.5% 이상 ~ 75% 미만	24점	20점	8점	12점
50% 이상 ~ 62.5% 미만	21점	17.5점	7점	10.5점
37.5% 이상 ~ 50% 미만	18점	15점	6점	9점
25% 이상 ~ 37.5% 미만	15점	12.5점	5점	7.5점
12.5% 이상 ~ 25% 미만	12점	10점	4점	6점
12.5% 미만	9점	7.5점	3점	4.5점
0%	6점	5점	2점	3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평가기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수상실적 인정범위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대상(大賞, 창의발전, 사회문화, 지역발전, 뉴미디어, 시청자제작, 라디오 프로그램상 및 특별상)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유관단체 : 전국규모의 방송유관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시청자단체 :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청자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 (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기 타 : 위원회가 인정하는 해외 우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명망 있는 언론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등
- 대상 프로그램 및 수상기간에 따른 원칙에 의거하여 배점함.
 -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수상실적은 개별 장르에 한정된 수상실적에 우선함.
 - 연간단위의 수상실적은 분기 및 월간단위의 수상실적에 우선함.
 - 자체제작이 50%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자체제작이 아닌 타 방송사의 우수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수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반영함.
 -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의 시상주체로부터 수상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상실적 점수 1회만 인정함.
 - 개인상 부문을 포함함.(단, 제작부문에 한함)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지상파TV, 지상파 DMB-TV	지상파R, 지상파 DMB-R	SO, 위성방송	보도 PP	홈쇼핑 PP	종합 PP(*)
		25점	25점	20점	20점	50점	22.5점
전담부서 설치여부	- 설치 만점/ 미설치 0점	5점	10점	5점	5점	25점	*
제작물 심의비율	- <표1> 참조	5점	-	5점	5점	-	*
제작진 참여여부	- 미참여 만점/참여 0점	5점	10점	5점	5점	25점	*
방통위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 <표2> 참조	10점	5점	5점	5점	-	*

(*)종합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9/10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참여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등을 평가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각 항목별(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등) 평가 점수 합산
 - 자체심의 미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건수에 따라 평가점수 총점에서 감점처리 (1건에서 5건 : 1.5점, 6건 이상 : 3점 감점)
 -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은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의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제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표1〉 제작물 심의비율에 따른 점수표

80%이상-100%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5점	4점	3점	2점	0점

〈표2〉 심의제재결과 중 사전 지적 비율에 따른 점수표

사전지적비율	80%이상-100%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지상파TV, 지상파DMB-TV 종편PP	10점	8점	6점	4점	0점
지상파R, 지상파DMB-R, SO, 위성방송, 보도PP	5점	4점	3점	2점	0점

* 수중계 프로그램 제외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지상파TV/R, 지상파DMB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100점	70점	85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심의관련 제규정 준수 배점 기준, 제재조치 결과 반영 감점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74조(협찬고지)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등
 - 수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점수에 50%만 반영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총점에서 감점
 - ① 주의 1점
 - ② 경고 2점
 -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 ②+③, ②+④ 5점
 - ③+④, ②+③+④ 6점
 - ⑤ 과태료 4점
 - ⑥ 시정명령 8점
 -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 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홈쇼핑PP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이 3회 이상 동일한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감점 가중
 - 한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유형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간으로 위반유형을 합산하여 누적건수가 더 많은 위반유형으로 분류하되, 누적건수가 동일한 경우 감점이 더 과중한 유형으로 분류
 - ①, ②, ④, ⑪의 유형 위반 시 2배 감점하되, 각 유형별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위반 유형으로 분류
 - 그 외 유형 위반 시 1.5배 감점

※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13개 유형으로 구분

- 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정성'(제9조~제13조)
- 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제14조~제18조)
- ③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제19조~제23조)
- ④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제24조의2~4)
- 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제25조~제34조)
- 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제35조~제42조의2)
- ⑦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제43조~제45조의2)
- ⑧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제46조~제50조)
- 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제51조~제52조)
- 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9절 기타'(제53조~제55조의2)
- ⑪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⑫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 ⑬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 (홈쇼핑PP)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이 3회 이상 동일한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감점 가중
 - 한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유형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간으로 위반유형을 합산하여 누적건수가 더 많은 위반유형으로 분류하되, 누적건수가 동일한 경우 감점이 더 과중한 유형으로 분류
 - ①의 유형 위반 시 2배 감점하되,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위반 유형으로 분류
 - 그 외 유형 위반 시 1.5배 감점

※ 제재조치의 위반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5개 유형으로 구분

-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 일반원칙, 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3조 최상급 표현'
-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① 제외)
-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격표시'
-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장 품목별 기준'
- 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장 금지 및 제한규정'

- 제재조치 의결일이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일 경우, 위반에 대한 선후 판단은 방통위 의결일, 방심위 의결일, 방심위 소위원회 의결일 순으로 정함
-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경우 가점(6점) 부여 (<표1> 참조)

〈표 1〉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점수표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의 구축 여부(3점)	제도의 운영결과(3점)			
	운영결과 上	운영결과 中	운영결과 下	운영결과 없음
3점/0점	3점	2점	1점	0점

-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라 함은, 기존 시청자위원회와는 달리 공정보도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방송사 내부에 별도로 구축된 제도로, 방송사 내부 전체 구성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 홈쇼핑PP의 경우, 허위/과장 이슈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를 제외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지상파TV	지상파R, 중편PP, 보도PP, 지상파DMB(TV/R)	SO, 위성방송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40점	30점	2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직권결정 또는 법원 판결 건당 감점
 -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 4점
 - ②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6점
 - ③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 6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 감점

- 전문가를 활용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경우 가점(3점) 부여
 - 방송사가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그 결과를 뉴스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경우, 사전에 방송사 내부의 여론조사 전문가*를 활용하여 조사 설계부터 결과 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검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 만약, 방송사 내부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없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도 인정 (단, 연중 여론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적용)
 - ※ 여론조사 전문가라 함은, 조사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학계·교수·유관학회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나 10년 이상 연구조사기관 실무경험자

- 직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법적 의무가 없는 EBS는 평가 제외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홈쇼핑PP
		30점	20점
편성시간대	- <표1>, <표2> 참조	10점	8점
시청자평가원 운영	- <표3> 참조	6점	4점
평가원 운영보고서	- <표4> 참조	6점	4점
시청자평가시간	- <표5>, <표6> 참조	8점	4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는 자체제작과 수중계 프로그램을 모두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0점
 - 자체제작 비율 50% 미만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 편성한 경우, <표1>의 편성시간대에 따른 평가를 실시, 평가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다만, 수중계와 자체제작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점수의 합계는 만점인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표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지상파TV의 경우)

편성시간대			등급 (점수)
월-금	토	일	
20:00-24:00	19:00-23:30	18:00-23:30	A(10점)
08:30-09:30	08:30-09:30	08:30-18:00	B(8점)
19:00-20:00	17:00-19:00 23:30-24:00	23:30-24:00	
07:00-08:30	07:00-08:30	07:30-08:30	C(5점)
09:30-12:00	09:30-17:00	-	
18:00-19:00	-	-	
24:00-00:30	24:00-00:30	24:00-00:30	
00:30-07:00	00:30-07:00	00:30-07:30	D(2점)
12:00-18:00			

* 지상파TV의 편성시간대는 KOBACO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

<표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PP의 경우)

편성시간대		등급 (점수)
월-금	주말	
19:00~01:00	17:00~01:00	A(8점)
06:00~19:00	07:00~17:00	B(6점)
01:00~06:00	01:00~07:00	C(3점)

* 보도PP·종합PP 점수산정 방식 : 8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0/8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 시청자평가원 운영 및 운영보고서 평가

- 시청자 평가원 운영의 경우, 평가원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시청자평가원 운영보고서는 프로그램 방송일자, 평가원 명, 출연시간, 평가 내용/아이템 등이 담겨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청자평가원의 평가가 자사 프로그램 홍보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 1점 감점
- 시청자평가시간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시간 중 자사 프로그램 홍보나 기획 프로그램을 제외한 시청자의견 코너가 차지하는 시간 비율(시청자평가원 시간 포함, 진행자 멘트 /브리지 등 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표3> 평가원 운영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시청자 평가원 운영	운영정도(등급)			
	3인 이상(A)	2인 운영(B)	1인 운영(C)	미운영(D)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6점	4점	2점	0점
홈쇼핑PP	4점	3점	2점	0점

<표4> 평가원 운영보고서 제출에 따른 평가점수

시청자 평가원 운영	제출 여부		제출보고서 평가	
	제출	미제출	양호·우수	미흡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3점	0점	3점	1점
홈쇼핑PP	2점	0점	2점	1점

<표5> 시청자 평가시간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시청자 평가 시간(프로그램 기준)	등급
30% 이상	A(8점)
25% 이상 - 30% 미만	B(5점)
20% 이상 - 25% 미만	C(2점)
20% 미만	D(0점)

<표6> 시청자 평가시간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홈쇼핑PP)

시청자 평가 시간(프로그램 기준)	등급
15분 이상	A(4점)
10분 이상 - 15분 미만	B(3점)
5분 이상 - 10분 미만	C(2점)
5분 미만	D(0점)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TV (30점)	기타 (지상파TV 제외) (20점)*
시청자 의견반영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설치 5점/ 미설치 0점	5점	-
의견반영 결과정리 제출여부 및 평가	- 제출 2점/ 미제출 0점 -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5점	-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여부	- 전문 공개 5점/ 공개열람 3점/ 요약본 공개 2점/ 미공개 0점	5점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른 감점	15점	-

(*) 기타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2/3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의견반영 전담부서의 경우, 시청자 의견 접수 처리 등과 같은 관련업무의 분장이
직제 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의견반영 결과정리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 등을 의미함
-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여부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미공개로 간주. 또한,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수준(요약본 공개, 전문공개)에 따라 차등 평가함
 - 다만,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을 방통위 등 외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회
도서관 등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한 경우, 중간점수(3점) 부여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평가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건당 총점(15점)에서 감점 처리
 - 주의 1점
 - 경고 2점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병과 시 6점
 - 시정명령 8점
 - 과징금 부과 10점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R, 지상파DMB, 종편/ 보도PP	SO/ 위성, 홈쇼핑PP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50점	3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 15점/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 시 22.5점 감점하되,
-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시 10점/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 시 15점 감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 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보도PP, 종편PP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30점	20점(*)	25점(**)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 만점/미개최 0점	5점		
회의록 공개 여부	- 공개 만점/비공개 0점	8점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여부	- <표1> 참조	5점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여부	- 시한준수 만점/위반 0점	5점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	- 운영의 충실성, 의견반영 정도 등	7점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2/3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5/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표1>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	80% 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20%이상	20%미만	없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월간 운영실적 보고시한(매월 20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는 0.5점씩 감점(최대 5점)
-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는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에게 설문조사한 값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치 사용. 이 때, 설문지 내용은 운영의 충실성, 의견 반영 정도 등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점수는 5점 척도를 사용함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종편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 (60점)	종편PP (30점)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표1> 참조)	30점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표2>참조)	30점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어린이 프로그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게 정규 또는 특집으로 제작되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3호 :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과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프로그램 장르 중 뉴스, 시사보도(매거진 등), 다큐멘터리(탐사/기행 등), 교육·문화예술, 퀴즈쇼를 포함한다.

- 다만, 기타 장르에 속하는 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1. 취학전 아동 종합교육 프로그램(예시> TV유치원)
2. 동요/동화구연/웅변/춤 등 어린이 참여 경연대회 프로그램
3. 어린이 언어교육, 과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특정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이 명백한 프로그램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1〉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8% 이상	8.0%	7.0%	6.0%	5.0%	4.0%	3.0%	2.0%	1.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30점	26.25점	22.5점	18.75점	15점	11.25점	7.5점	3.75점	0점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2〉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4% 이상	4.0% 미만	3.5% 미만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1.0% 미만	0.5% 미만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0.5% 이상	
30점	26.25점	22.5점	18.75점	15점	11.25점	7.5점	3.75점	0점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나. 배점방식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의 편성 실적을 평가

-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름

평가척도	세부기준	지상파TV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60점	20점	10점	35점
자막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24점	8점	4점	14점
수화방송 편성비율		12점	4점	2점	7점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24점	8점	4점	14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의

- 자막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전자 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하여, TV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수화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화면(Picture in Picture)을 통해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수화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프로그램 인물들의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면의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R/DMB),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지상파 TV	지상파 R	보도PP	홈쇼핑PP	지상파 DMB	종편 PP
		80점	70점	70점(*)	10점	10점	65점(**)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 재난방송의 편성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25점	28점	-	5점	3.15점	-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25점	27점	-	-	3.1점	-
	- 재난방송 실시율에 대한 5등급 평가	10점	-	-	-	-	-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 자체 제작된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여부(매뉴얼 마련 시 만점 / 없는 경우 0점)	5점	5점	-	5점	1.25점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 (관련 인력 운영 시 만점 / 미운영시 0점)	5점	5점	-	-	1.25점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5점	5점	-	-	1.25점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조치 비율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을 시정 조치한 비율을 5등급 평가(<표1> 참조)	5점	-	-	-	-	-

(*)지상파 TV 8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7/8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지상파 TV 8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3/1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재해)에 의거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제3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 제2항에 의거,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경우 종합편성사업자에 한함(EBS 제외)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평가방식 : 평가대상 사업자의 평균(M)과 표준편차(σ)를 구하고,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른 구간별 점수를 이용하여 5등급으로 평가
- 재난방송의 편성실적이라 함은 재난발생시 혹은 재난발생 전후 편성한 속보/특보 등의 특집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량을 의미함(수중계 프로그램의 편성량과 자막방송 건수도 편성실적으로 인정)
 - ※ 수중계가 없는 독립지역방송사의 경우, 방통위가 요청한 재난방송 건수의 차이를 반영하여 편성실적 산정 시 가중치 적용
- 재난피해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실적(홈쇼핑PP 제외)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제작/방영된 캠페인 등을 의미함
 - ※ 재난관련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모든 다큐멘터리는 재난방송 편성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재난방송 실시율이라 함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에 따라 3단계 이상 재난 상황에 대한 방송요청 대비 재난방송을 실시한 비율을 의미함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는 전임 또는 겸임(재난방송 업무와 타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으로 재난방송 업무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임.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은 재난방송 매뉴얼 교육 및 재난 예방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적을 교육 시간량에 의거하여 평가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정한 교육은 보도국이나 관련 부서 등 일부가 참가한 교육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온라인 강의실적 제외)
 - 외부기관이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직원을 참여시키거나 전문 강사의 초청간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도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 민방위 비상소집, 예비군 종합방호훈련 등 재난방송의 제작·편성 또는 송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직장 내에서의 비상훈련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한 비율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요구한 시정조치 건수 대비 시정건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기준은 <표1>과 같음

<표1> 방송재난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 조치 비율 평가 기준

비율	100%	80%이상	60%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0점

※ 대상 사업자 : 지상파TV 사업자 중 KBS, MBC, SBS (지역민방 제외), 보도PP, 종편PP

※ 방송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재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또는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밖에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재해)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TV, 종편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10점)
공익광고 편성비율(<표 1> 참조)	5점
광고판매기준시간대별 편성비율(<표 2> 참조)	5점

다. 평가점수 산정 기준

-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와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를 말함
-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10조)*를 기준으로 초과 실적에 대해 5등급 평가
 -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 그 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표1> 공익광고 편성비율 평가 기준

고시 기준 대비 편성 비율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광고판매기준시간대별 편성비율’은 광고판매기준시간대별 편성실적을 평가하되, SA등급 시간대 편성실적(비율)×150%과 A등급 편성실적(비율)×100%를 합산하여 5등급 평가

<표2> 시급별 편성비율 평가 기준

20%이상	5점
15% 이상 ~ 20% 미만	4점
10% 이상 ~ 15% 미만	3점
5% 이상 ~ 10% 미만	2점
5% 미만	1점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 50%이상 종합편성 지상파TV(KBS, MBC, SBS, OBS), 종편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 (60점)	종편PP (45점)*
오락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	30점	-
보도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	30점	-

(*) 지상파 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3/4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 기준

- 주시청시간대의 보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평가함
 - 주시청시간대라 함은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3항에 의거, 평일은 오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함.
 -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며, 방송프로그램 분류기준 고시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중앙전파관리소에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의 기준 적용

○ 오락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오락 분야의 편성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30점, 70% 이상인 경우 0점
- 오락 분야의 편성비율이 6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30점- (편성비율-60%)x3점]

○ 보도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보도 분야의 편성비율이 42% 미만인 경우 30점, 52% 이상인 경우 0점
- 보도 분야의 편성비율이 42% 이상 ~ 52% 미만인 경우 [30점- (편성비율-42%)x3점]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 50% 미만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인 KBS-1TV 지역총국, 지역MBC-TV, 지역민방-TV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평가(TV-지역)	6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평가함.
 - KBS-1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방송사(총국)가 자체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나 지역방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도 포함함.
- 자체제작 프로그램 산정시 포함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범위는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를 충족시키는 공동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량을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입함.
- 양질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 장려를 위하여 전국에 방송된 지역 자체제작물 또는 지역 공동제작물은 편성시간의 50%를 가산하여 인정함.
- 지역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정되는 지역 공동제작물의 경우도 전국에 방송되었을 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

○ KBS 지역총국(KBS-1TV)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 비율	10% 이상	10%미만 ~ 8.75%이상	8.75%미만 ~ 7.5%이상	7.5%미만 ~ 6.25%이상	6.25%미만 ~ 5%이상	5%미만 ~ 3.75%이상	3.75%미만 ~ 2.5%이상	2.5%미만 ~ 1.25%이상	1.25% 미만
KBS 지역총국 (KBS-1TV)	60점	52.5점	45점	37.5점	30점	22.5점	15점	7.5점	0점

○ 지역 MBC-TV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 비율	15% 이상	15%미만 ~ 13.12%이상	13.12%미만 ~ 11.25%이상	11.25%미만 ~ 9.37%이상	9.37%미만 ~ 7.5%이상	7.5%미만 ~ 5.62%이상	5.62%미만 ~ 3.75%이상	3.75%미만 ~ 1.87%이상	1.87% 미만
지역 MBC-TV	60점	52.5점	45점	37.5점	30점	22.5점	15점	7.5점	0점

○ 지역 민방TV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 비율	20% 이상	20%미만 ~ 17.5%이상	17.5%미만 ~ 15%이상	15%미만 ~ 12.5%이상	12.5%미만 ~ 10%이상	10%미만 ~ 7.5%이상	7.5%미만 ~ 5%이상	5%미만 ~ 2.5%이상	2.5% 미만
지역 민방TV	60점	52.5점	45점	37.5점	30점	22.5점	15점	7.5점	0점

직접제작 ·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편성비율	SO, 위성방송
	20점
90% 이상	20점
80% 이상 ~ 90% 미만	15점
70% 이상 ~ 80% 미만	10점
60% 이상 ~ 70% 미만	5점
60% 미만(녹음 및 녹화 채널)	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직접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직접제작 프로그램 : 해당 방송사업자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 외주제작 프로그램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정의는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1항의 기준을 따름
- 직접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 평가
-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는 편성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되, 직접사용채널이 2개 이상일 경우, 채널별 만점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널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채널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산정함.
-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지역채널의 액세스(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가. 평가대상

- SO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10점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표1> 참조)	5점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표2> 참조)	5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액세스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액세스(시청자참여) 프로그램 : 방송제작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방송된 프로그램
- 액세스 프로그램을 SO간에 교환한 경우 편성실적으로 100% 인정함.
(교환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프로그램 편성을 배제하고 시간을 할애한 점을 인정)
- 액세스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 비영리법인이 제작하지 않은 시정뉴스나 선관위 제작 프로그램, 관내소식 등은 인정하지 않음.

<표1>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에 따른 5등급 평가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점수
5% 이상	5점
3% 이상 ~ 5% 미만	4점
1% 이상 ~ 3% 미만	3점
1% 미만	2점
미편성시	0점

<표2>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점수
노력 평가 우수	5점
보통	2.5점
미흡	0점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나. 배점방식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배점
	20점
80% 이상	20점
60% 이상 ~ 80% 미만	15점
40% 이상 ~ 60% 미만	10점
20% 이상 ~ 40% 미만	5점
20% 미만	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제3항 제2, 3, 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채널의 운용 등) 제3항에 의거함.

※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 ③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채널의 운용 등)

- ③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금지한다.
 1. 당해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 프로그램 및 주민 생활 정보 프로그램
 2. 당해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편성 평가(<표1> 참조)	1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개념 정의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비수익적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

※ 직·간접적인 상품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실적에서 제외

- 월간 단위로 편성되는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실적으로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표1>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시간(월간)에 따른 5등급 평가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시간	평가점수
90분 이상	10점
60분 이상 ~ 90분 미만	7.5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점
30분 미만	2.5점
미편성시	0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DMB-TV, 지상파DMB-R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지상파 DMB-TV/R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	6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 방송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중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DMB)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프로그램
- 지상파 방송용으로 제작돼 수중제한 프로그램은 제외함.
- 케이블 등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해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프로그램 포함
- 매체별(지상파DMB TV, 지상파DMB 라디오)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 2개 이상일 경우, 채널별 만점(60점)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널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채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산정함.

<표1>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5등급 평가(지상파DMB)

구분	평가등급의 비율	평가점수
지상파DMB TV/R(60)	75%이상	60점
	50%이상 ~ 75%미만	50점
	25%이상 ~ 50%미만	30점
	25%미만	20점
	0%	10점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5등급 평가	3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각 7.5점씩 총 30점 배점함.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재무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단, 증가율의 경우 전년도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무비율을 평가대상으로 함).
- 4개 재무비율 산정 방식: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전 산업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σ)를 구하고, 평균 ± 0.5 , 1 표준편차에 따른 구간별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함. 이에 따라 점수배점 구간을 5개 구간(7.5점, 6점, 4.5점, 3점, 1.5점)으로 나누어 평가함.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30점)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10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15점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5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10점)

No.	세부 항목	내용	배점
1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을 정관에서 3% 미만으로 낮추고 있는 경우	+1
2	감사의 수	감사위원회 설치 또는 상근감사 있음	2
		감사위원회 미설치, 상근감사 없음	0
3	감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직무와 겸직 여부	직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음	2
		직무를 겸직하고 있음	0
		※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만점으로 함	
4	감사가 보유한 주식수와 지분율(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감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5	내부감사실 운영 여부 및 내부감사실의 조직구성	내부감사실 운영	2
		내부감사실 미운영	0
6	감사의 주요 업무경력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음	2
		업무경력이 충분하지 않음	1
7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중 부적격자 여부	부적격자가 없음	2
		부적격자가 있음	0

(*) 방송법 또는 감사업무 경력 5년 이상에 준하는 업무경력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15점)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내용	배점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의견 거절	-15점
		부적정 의견	-10점
		한정 의견(감사범위제한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배)	-5점
2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검토범위의 중요한 제한”	-15점
		“경영자의 보고가 적절하지 아니함”	-10점
		“검토범위의 일부 제한”	-5점
		“경영자의 보고에 중요한 취약점이 일부 누락됨”	-3점
		“경영자의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하게 보고함”	-2점
		※ 검토보고서 첨부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3	내부회계 관리규정 마련 여부	내부회계 관리규정 있음	2점
		없음	0점
4	내부회계 관리자	① 내부회계 관리자 지정(근거문서 제출)	1점
		내부회계 관리자 없음	0점
		② 상근임원	1점
		내부회계 관리자 없음	0점
5	내부회계 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한 횟수	연간 2회 이상	2점
		연간 1회	1점
		보고하지 아니함	0점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보고할 경우 만점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본점수 1점으로 평가함	
6	감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횟수	연간 1회	2점
		보고하지 아니함	0점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보고할 경우 만점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본점수 1점으로 평가함	
7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및 윤리강령이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내부회계 관리제도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내용	①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1점
		윤리강령 없음	0점
		② 전달수단이 2가지 이상	0.5점
		전달수단 1가지	0.25점
		전달수단 없음	0점
		③ 인사 관련 조치 포함	0.5점
		인사 관련 조치 미포함	0.25점
조치내용 없음	0점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내용	배점
8	업무분장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담당자, 정의, 승인권한, 업무절차 등)	누락된 세부항목 없이 문서에 의하여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	2점
		누락된 세부항목 1개	1.5점
		누락된 세부항목 2개	1점
		누락된 세부항목 3개 이상	0.5점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음	0점
9	재무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백업하는 절차	월간 단위	2점
		분기 단위	1점
		반기 단위	0.5점
		백업 절차 없음	0점
10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됨	1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에 의하여 수행됨	0.5점
		모니터링 실시하지 않음	0점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함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5점)

	세부항목	내용	배점
1	감사보고서 공시의 적정성	① 감사보고서일까지의 기간 60일 이하	1점
		60일 초과 90일 이하	0.5점
		90일 초과	0점
		②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기간 75일 이하	1점
		75일 초과 105일 이하	0.5점
		105일 초과	0점
2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충분성	① 회사개황 공시함	1점
		공시하지 않음	0점
		② 주요 재무사항 공시함	1점
		공시하지 않음	0점
		③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 공시함	1점
		공시하지 않음	0점
		※ 회사개황,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지상파TV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중편PP,홈쇼핑PP, 지상파 DMB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에 대한 5구간 평가(10점)	20점	10점(*)
1인당 교육비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5구간 평가(5점)		
직무능력 향상 교육시간	- 직무능력 향상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한 5구간 평가(5점)		

(*) 지상파TV 2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10점)

- 각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을 산출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중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1인당 교육비 (5점)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개 구간(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간(연 평균) (5점)

- 각 사업자의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 시간을 파악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5구간(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방송기술 및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지상파 TV, 종편PP (30점)	지상파R, 보도PP, 홈쇼핑PP (20점)*	SO, 위성방송, 지상파 DMB (20점)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인증제품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비 비율에 대한 5등급 평가(10점)	15점	10점	15점
	-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에 대한 5등급 평가(5점)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에 대한 5등급 평가(15점)	15점	10점	5점(**)

-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2/3을 곱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 지상파TV 1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3을 곱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비 비율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방송기술투자,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액 등) 비율을 구한 후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 0.5, 1 표준편차에 따라 구간을 총 5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

-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액 비율을 구한 후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 0.5, 1 표준편차에 따라 구간을 총 5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 인증제품은 “TTA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및 “방송장비규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제품을 가리키며, 컨버터, STB 등 수신 장비는 투자액에서 제외(ETRI의 ‘방송장비 분류체계’ 준용)
- “방송장비규격심사위원회”는 정부, 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방송사 투자 장비에 대한 발주규격 등의 심의 및 인증투자액 반영 여부를 결정하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과(전파방송관리과)에 소속
- 인증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방송장비에 한정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구입비 등) 비율을 구한 후 지상파 및 PP 사업자(종편PP, 보도PP, 홈쇼핑PP) 그룹과 SO/위성 사업자 그룹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구간을 총 5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 장애인고용비율(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	10점
- 여성고용비율(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	1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장애인고용비율 평가(10점)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장애인 고용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상시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수 대비 2.5% 이상 장애인 고용시 1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며, 그 다음부터 0.5% 간격으로 5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함.
-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신고서상의 월평균 상시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자(법인기준의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 항목 평가를 제외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자(법인기준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만점을 부여함.
- 세부 배점

기준	2.5%이상	2.0%이상 ~ 2.5%미만	1.5%이상 ~ 2.0%미만	1.0%이상 ~ 1.5%미만	0.5%이상 ~ 1.0%미만	0.5%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여성고용비율 평가(10점)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여성고용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여성 종업원수를 평균 종업원수로 나누어서 구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중치는 80% : 20%로 함.

$$\text{연도별 여성고용비율} = \frac{\text{여성 정규직 종업원수} \times 80\% + \text{여성 비정규직 종업원수} \times 20\%}{\text{정규직 종업원수} \times 80\% + \text{비정규직 종업원수} \times 20\%}$$

- 지상파(TV, R, DMB)의 경우 지상파 사업자 그룹(지상파 TV/R/DMB)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총 5개 배점구간으로 나누어 10점에서 2점까지 구분하여 평가함.
-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의 경우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라 총 5개 배점구간으로 나누어 10점에서 2점까지 구분하여 평가함.
- 정규직의 요건
 - (1)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것
 -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 (3) 전일제 근로조건(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일 것
 - (4) 계속근무가능자일 것

(*) 계속근무가능자 : 계속근무불가능자가 아닌 자

계속근무불가능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으로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없이도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자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4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공정거래법 감점내역

사업자별 배점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감점	2점	4점	8점	10점	15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등 관계법령 감점내역

구분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감점	4점	8점	10점	15점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구분	지상파TV(KBS, MBC, SBS), 중편PP	지상파TV(3사 제외), 지상파R*, 보도PP, 홈쇼핑PP, SO, 위성방송, 지상파 DMB*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 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실시 적정성	2점	10점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	8점	-

※ 지상파R 및 지상파DMB-R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 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만 평가하여 만점 기준 환산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 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적정성

구분	내용	배점	
		지상파TV 중편PP	기타
방송 프로그램 등의 유통 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①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	수립됨	2.5점
		수립되어 있지 않음	0점
	② 세부실행계획 수립 여부	수립됨	2.5점
		수립되어 있지 않음	0점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의 실시 적정성	① 세부실행계획의 달성정도	우수	2.5점
		미흡	0점
	② 세부실행계획 실시에 대한 평가 여부	실시함	2.5점
		실시하지 않음	0점

-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 5등급 평가

- 표준계약서 사용 건 수 대비 외주제작사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 건 수 비율 평가

<표1>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 기준

구분	100% 이상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40% 미만
지상파TV(KBS, MBC, SBS), 중편PP	8점	6점	4점	2점	0점

* 표준계약서 : 문체부가 제시한 제작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SO, 위성방송	지상파TV,지상파R, 중편PP,보도PP, 지상파 DMB	홈쇼핑PP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평가	30점	20점(*)	40점(**)

(*) SO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2/3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SO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4/3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구분	배점	배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전문성(6점)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지정	3점
		미지정	0점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적격성	적격	3점
		미적격	1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 및 공개(12점)	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여부	수립	1점
		미수립	0점
	② 개인정보의 취급목적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2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2점
	③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유 기간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구분	배점	배점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2점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 되는 경우)(*)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2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⑤ 개인정보취급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 되는 경우)(*)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2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⑥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2점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⑦ 개인정보 취급방안의 변경시 공개여부	공개 또는 미변경	1점
		변경시 미공개	0점
	개인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행여부(6점)	① 개인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립되었으며 시행되고 있음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②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구축됨	2점
		구축되지 아니함	0점
③ 개인정보 관리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립되었으며 시행되고 있음	2점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1점
		수립되지 아니함	0점
개인정보 관리 실태(6점)		①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절차의 적절성	암호화 절차가 적절함
	암호화절차가 미흡함		1점
	암호화절차가 수립되지 아니함		0점
	②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의 적절성	동의 절차가 적절함	2점
		동의 절차가 미흡함	1점
		동의 절차가 수행되지 아니함	0점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의 적절성	파기 절차가 적절함	2점
		파기 절차가 미흡함	1점
		파기 절차가 수행되지 아니함	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후, 매체별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함.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 수신료 매출액 대비 수신료 PP 배분액 비율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25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해당 연도의 수신료 매출액 대비 수신료 PP 배분액 비율을 산출하고 평균(M) 및 표준편차(σ)를 산출하여, 평균 ± 0.5 , 1 표준편차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누어 점수 배점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및 PP만족도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10점
PP 만족도 평가	2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10점)

No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배점
1	채널공급 선정기준의 공개여부	① 공개 : 2점, 요청시 공개 : 1점, 비공개 : 0점	2점
2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여부	①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없음 : 3점 ②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이유가 기존계약서에 명시됨 : 3점 그 이유가 기존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 0점	3점
3	채널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지난 1년간 방송채널사업자로부터 채널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없음 : 3점 ② 이의가 있을 경우 선정심사정보를 제공함 : 3점, 제공하지 않음 : 0점	2점
4	무료계약 여부	① 지난 1년간 채널사업자와의 무료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음 : 3점 ② 지난 1년간 채널사업자와의 무료계약 채널의 수가 1개일 경우: 2점, 2~3개일 경우 1점, 4개 이상일 경우 0점 (단, 홈쇼핑 채널 제외)	3점

- PP 만족도 평가(20점)

- PP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함 (최고, 최저점 제외한 평균값 사용)
- 조사항목은 채널 선정방법에 대한 만족도, PP사용료 지급에 대한 만족도, 부당요구 등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됨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20점 만점으로 환산)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세부기준	배점
- 디지털 기본형 상품의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 평가 (표1 참조)	10
- 디지털 기본형 상품 전체 채널 수 대비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대한 비율 평가 (표2 참조)	5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디지털 기본형 상품* 내에서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이 때, 기본형 상품은 80개 채널 이상 상품 중 가장 저가의 상품을 의미함
 - 현재,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는 총 14개로, 지역채널은 1개 이상의 복수를 운영하더라도 1개로 산정

<표1>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따른 평가

개수		평가점수
SO	위성	
14개	13개	10점
13개	12개	9점
12개	11개	8점
11개	10개	7점
10개	9개	6점
9개	8개	5점
8개 이하	7개 이하	2점

* 평가점수 기준 최고 채널 개수는 매년 공익채널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수 조정

<표2> 전체 채널 수 대비 공공, 공익, 복지, 지역 채널의 수에 대한 비율 평가

개수	평가점수
12% 이상	5점
10% 이상 ~ 12% 미만	4점
10% 미만	2점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30점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의 명문화 여부	4점
	-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3점
	- 중소기업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5점
	- 농어민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3점
	- 복수 업자간 공정 경쟁 유도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4점
	- 납품업자에게 선정기준 공개 여부	3점
	- 납품업자의 친인척인 임직원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지 여부	2점
	- 납품업자 제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유무	2점
	- 상품 선정과 관련된 임직원 윤리강령 조항 유무	2점
	- 납품업자 불만 처리 창구 유무	2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세부 배점방식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배점
1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의 명문화 여부	상품(납품업자)선정기준, 상품(납품업자) 평가 Sheet, 기타 명문화된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 지표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4점 부여	4점

	세부 항목	세부 배점방식	배점
2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1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 미만인 경우 1점, 5% 이상인 경우 2점 추가 부여	3점
3	중소기업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2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0% 미만인 경우 1점, 50% 이상인 경우 3점 추가 부여	5점
4	농어민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1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 미만인 경우 1점, 5% 이상인 경우 2점 추가 부여	3점
5	복수 업자간 공정 경쟁 유도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신상품 창구 개방, 복수협력사 거래, 기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부 기준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4점 부여	4점
6	납품업자에게 선정기준 공개 여부	신규입점 절차 및 선정기준 공고, 입점계시판 등의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상담창구에서 입점 상담시 구두로 공개,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선정기준 공개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3점 부여	3점
7	납품업자의 친인척인 임직원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지 여부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규제사항, 관련 제보 접수 시 경영진단팀에서 사규를 통해 제재, 고객평가단의 상품 선정,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임직원의 선정 관여 배제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2점
8	납품업자 제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유무	공공기관 또는 외부신용평가기관 등을 통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사전 품질 확인 절차, 사전심의 의무화, 고객평가단의 상품 선정, 회계재무팀 등 담당부서 재확인 절차,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사실 여부 확인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2점
9	상품 선정과 관련된 임직원 윤리강령 조항 유무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내규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2점
10	납품업자 불만 처리 창구 유무	건의 창구 마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을 통한 불만 접수 및 처리, 즉각적인 불만 처리에 대한 상근조직 운영,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납품업자 불만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2점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20점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1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로 측정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항목 도입절차

- 1차 년도에는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항목을 제외하고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결과』 항목만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30점 만점으로 환산
- 2차 년도부터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항목을 평가하되,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시 협력업체의 개선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차기년도 반영 정도를 피드백의 적절성으로 평가
- 다만, 협력업체 일방의 입장이 협력업체 개선요구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요구사항의 정당성 및 귀책사유가 방송사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피드백의 적절성 여부 평가리스트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의 적절성을 평가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1	협력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만족도	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만족도	4점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2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유통업체에 납부하는 방송 판매 수수료에 대한 만족도	4점
		유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3	판매대금 지급에 대한 만족도	판매대금 기한 내 지급 여부에 대한 만족도	4점
		대금 납부 방법에 대한 만족도	
		납품 대금 감액 여부에 대한 만족도	
4	상품 취급에 대한 만족도	부당한 수령 지체 정도	4점
		부당한 반품 정도	
5	부당요구 등에 대한 평가	판촉행사 강제 정도	4점
		경제적 이익 강요 정도	
		사업 활동 방해 정도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1	평가결과 피드백 (개선활동)의 적절성	피드백을 적절하게 수행함	10점
		피드백을 수행하였으나 미흡함	5점
		피드백을 수행하지 아니함	0점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 소비자원의 구제 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평가 (<표1> 참조)	2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조치 사항 건수에 따라 평가
 - 구제 조치는 단순 상담, 정보제공 등을 제외한 조치(환급, 교환, 수리/보수 등) 의미

<표1>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점수배점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점수
없음	20점
1건이상 3건이하	18점
4건이상 6건이하	16점
7건이상 9건이하	14점
10건이상 12건이하	12점
13건이상 15건이하	10점
16건이상 18건이하	8점
19건이상 21건이하	6점
22건이상 24건이하	4점
25건이상 27건이하	2점
28건이상	0점

콜센터 운영실적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20점
디지털 전환 및 가입(SO는 디지털 상품, 위성방송은 HD 상품)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및 고지	<표 1> 참조	10점
콜센터 상담실적 보고서 제출	<표 2> 참조	1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디지털전환 및 가입 (SO는 디지털 상품, 위성방송은 HD 상품)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및 고지의 경우, 방송화면(자막 포함)과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및 고지를 의미함
 - 방송화면을 통한 안내 또는 고지의 경우 시청자의 시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일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표 1>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고지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월)

안내/고지 실적	평가점수
방송화면(매일 1회 이상) / 홈페이지	10점
방송화면(매일 1회 이상)	7점
홈페이지	3점
실적 없음	0점

- 디지털 전환 관련 상담실적 보고서에 ①상담일시, ②상담내용, ③처리여부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표 2> 상담 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평가 점수

상담실적 보고서	제출여부		제출 보고서 평가		
	제출	미제출	양호	보통	미흡
SO · 위성	5점	0점	5점	2.5점	0점

디지털 상품/HD 상품 전환 및 가입률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디지털 전환 및 가입률 (SO - 디지털 상품, 위성방송 - HD 상품)	<표 1> 참조	3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디지털 전환 및 가입비율’이란, SO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디지털 상품 가입자의 비율을, 위성방송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HD 가입자의 비율을 말하며, 전환 및 가입률 실적(최고)에 따른 상대 평가를 하되,
 - ①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그룹과 ② 그 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그룹 내에서 상대 평가
 - ※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말함
 - 전국권역인 위성방송은 대도시 그룹에 포함하여 평가

<표 1> 디지털 전환 및 가입률 비율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비율	평가점수
87.5% 이상	30점
75% 이상 ~ 87.5% 미만	27점
62.5% 이상 ~ 75% 미만	24점
50% 이상 ~ 62.5% 미만	21점
37.5% 이상 ~ 50% 미만	18점
25% 이상 ~ 37.5% 미만	15점
12.5% 이상 ~ 25% 미만	12점
12.5% 미만	9점
0%	6점